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의안번호 제720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재출자 : 2001. 11. 15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11. 15
다. 상 정·의 결 일 자 : 2001. 11. 21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도시계획법시행일(2000. 7. 1)현재 도시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이상 미 집행된 시설은 2001. 12. 31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

○ 2002. 1. 1부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 집행된 시설부지 등 지적법 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되어 있어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코자 함.

3. 주요골자

○ 고성·배둔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역명	시설명	세부시설	기 정		변 경		증 감	
			시설수 (개소)	면 적 (㎡)	시설수 (개소)	면 적 (㎡)	시설수 (개소)	면 적 (㎡)
고성	도로	대 로	5	535,900	5	504,500	-	△31,400
		중 로	18	243,490	19	232,354	1	△11,136
		소 로	136	367,238	106	302,472	△30	△64,766
	공원	자연공원	2	1,310,000	2	1,186,500	-	△123,500
		시설녹지	3	15,890	3	15,950	-	60
배둔	도로	대 로	1	50,120	1	50,120	-	-
		중 로	4	30,417	4	30,417	-	-
		소 로	29	50,444	26	45,922	△3	△4,522

4. 의견청취내용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여부

5. 의견을 듣게된 경위

○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변경 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음.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제시의 건은 1999. 10. 21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제한)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제도 보완이 요청되어

○ 2001. 1. 28 도시계획법의 위헌 조항의 개정을 포함하여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또한 동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고성읍 및 배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 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된 시설은 2001. 12. 31 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새로이 반영하도록 하고

○ 2002. 1. 1부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 등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코자 하려는 것으로 고성·배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만, 제출된 도로결정(변경)조서에서 경남도고시 392호는 최초 결정일이 1993. 11. 25일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획임에도 변경(결정)하려는 지와 신설되는 도시계획선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당하게 계획되었는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도시계획변경 시 우리 고성군은 농어촌지역으로서 농어촌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도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면 하는데

● 답 :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군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전국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데 우리 고성군을 선정하도록 실사하였으며, 내년도에 국비 5억원과 지방비 5억, 합계 10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약속 받아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문 :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민원발생은 없는지

● 답 : 기존의 도시계획을 폐지(풀어주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민편의제공은 물론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므로 주민의 호응도가 좋은 편임.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1. 11.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고성군의회의견서

제 목	고성 · 배둔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의 견

본 의견 제시의 건은 1999. 10. 21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제한)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제도 보완이 요청되어 2001. 1. 28 도시계획법의 위헌 조항의 개정을 포함하여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또한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고성읍 및 배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 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 된 시설은 2001. 12. 31 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새로이 반영하도록 하고 2002. 1. 1부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 등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코자 하려는 것으로 고성 · 배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

2001. 11. 21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 계 수